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강습 교육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근거		○ 「화재예방법」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내지 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교육 대상	신청자격	○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부를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결격 해당자 제외)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만 15세 미만인 사람 2. 정신질환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단,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3. 팔, 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 사람 4. 기타 지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 5. 교육수료 취소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상호간의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7.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 근거 : 안전원 「교육업무규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교육 안내	과정명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강습일정	○ 안전원홈페이지 강습일정 참고(강습교육 신청 > 교육일정 클릭)										
	교육과정	<p>※ 1일 8시간 교육(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정</th> <th>교육형태</th> <th>교육일수/시간</th> <th>교육장소</th> <th>수수료(원)</th> </tr> </thead> <tbody> <tr> <td>집합과정</td> <td>소집교육</td> <td>2일(16시간)</td> <td>안전원 교육장</td> <td>96,000원</td> </tr> </tbody> </table>	과정	교육형태	교육일수/시간	교육장소	수수료(원)	집합과정	소집교육	2일(16시간)	안전원 교육장	96,000원
	과정	교육형태	교육일수/시간	교육장소	수수료(원)							
집합과정	소집교육	2일(16시간)	안전원 교육장	96,000원								
학습흐름도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과정개설 (시도지부) → 수강신청 (인터넷) → 소집교육 2일(16시간) → 교육이수 (자격취득) </div> <p>※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22.12.1 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p> <p>※ 교육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업무대행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존선임자를 변경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p>※ 교육면제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 ‘22.12.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되어 선임 유지중인 소방안전관리자 											

	수료기준	1. 소집교육(2일) → 실무능력평가 합격 → 수료(자격 취득) 2. 2교시 이상 결강 시 미수료 ※ 결강기준 : 25분 이상 각각시 1교시 결강(매교시 적용)													
	일정변경	○ 해당 강습교육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 (단, 해당 연도 강습일정에 한하여 일정변경 가능)													
	교육장소	○ 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교육 접수	교육비	○ 강습교육비 : 96,000원 ※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사진(3.5*4.5cm) 1매, 신분증(교육당일 지참)													
	환불 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환불기준</th> <th>환불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할 경우</td> <td>전 액</td> </tr> <tr> <td>과오납한 경우</td> <td>과오납 금액</td> </tr> <tr> <td>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할 경우 (실무능력평가 불합격자를 포함한다)</td> <td>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td> </tr> <tr> <td>교육을 받지 않고 신청 할 경우</td> <td>교육수수료의 20% 공제한 금액</td> </tr> <tr> <td>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과오납한 경우는 제외한다)</td> <td>없음</td> </tr> </tbody> </table>		환불기준	환불금액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할 경우	전 액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할 경우 (실무능력평가 불합격자를 포함한다)	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교육을 받지 않고 신청 할 경우	교육수수료의 20% 공제한 금액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과오납한 경우는 제외한다)	없음
		환불기준	환불금액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할 경우		전 액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할 경우 (실무능력평가 불합격자를 포함한다)		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교육을 받지 않고 신청 할 경우		교육수수료의 20% 공제한 금액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과오납한 경우는 제외한다)	없음														
[환불 유의사항]															
1. 신용카드 결제 후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환불신청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교육비
결제방법 안내

» 신용카드 결제



주의사항

1. 신용카드 결제 후 교육실시 전일까지 환불신청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신청 하셔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주의사항

1. 강습교육 신청 후 익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강습교육 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
2. 무통장 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재사용(다시 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이 불가능합니다. 재사용으로 인한 금전손실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이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폰 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5.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http://www.kfsi.or.kr> 접속 (교육정보 > 강습정보 > 강습신청내역 메뉴)]
6.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3주 정도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지부별
연락처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 850-1378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 257-0131
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구)	02) 850-1392	경기북부지부(파주)	031) 945-3118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 553-8423	강원지부(횡성군)	033) 345-2119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 431-2393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043) 237-3119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 569-1971	전북지부(전주 완주군)	063) 212-8315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 942-6679	경남지부(창원 성산구)	055) 237-2071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 638-4119	제주지부(제주시)	064) 758-8047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 256-9011	-	-

※ 별첨1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 및 시간

강습과목		시간
이론	소방관계법령	2
	소방계획 수립,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포함)	1
	응급처치 이론	1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	1
	소 계1	5
실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1
	소방시설 유지·관리	3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1
	소 계2	5
실습 및 평가	소방계획 수립 실습·평가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포함)	1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실습·평가	1
	응급처치 실습·평가	1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실습·평가	1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1
	형성평가	1
	소 계3	6
총 계		16

비고. 교육종료 전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 별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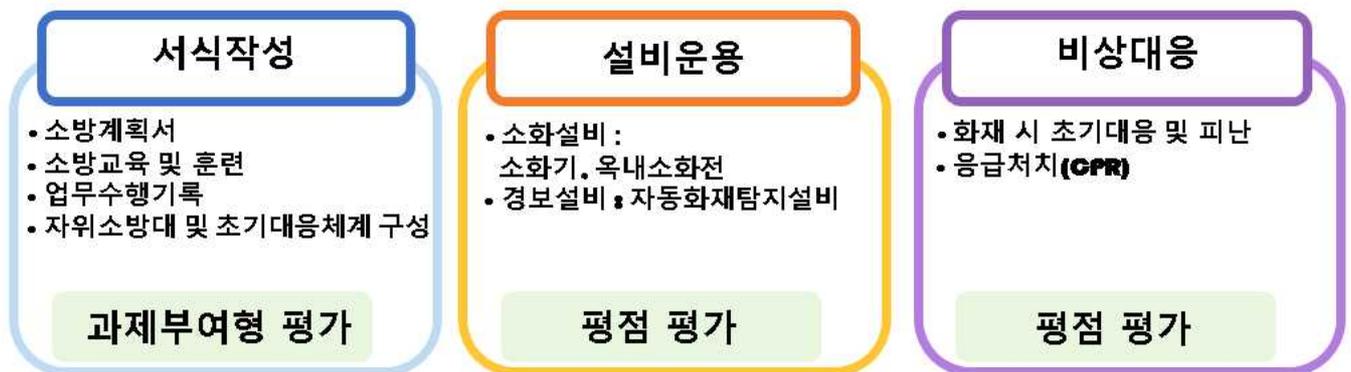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평가 시행 안내

1. 실무능력평가 개요

- 정 의 : 안전관리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
- 추진배경 : “무엇을 알고 있나” 보다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로 초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의 현장적용성 확보
- 교육과정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전 과정

2. 실무능력평가 주요내용

- 평가개요



- 평가절차 : 시범(강사시범) ⇨ 실습(개별/조별) ⇨ 평가(개인평가) ⇨ 재평가(불합격자)

3. 과정별 평가항목

구 분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설비 운동	소 화 기	○
	옥 내 소 화 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서 식 작 성		소방계획서, 소방교육 및 훈련 업무수행기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비 상 대 응		화재대응 및 피난요령, 응급처치(CPR)

4.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

구 분	평점평가	과제부여형 평가
적용과목	설비운동 전 과목, 응급처치	서식작성 전 과목, 화재대응 및 피난
평가방법	설비운동 및 점검능력 평가	서식작성 또는 실습 평가
합격기준	매 과목 12점 이상(20점 만점)	Pass / Non-pass